

2026년 하얀연꽃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**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**에 따르며,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과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(시설급여)으로 갱신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2. 계약의 목적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향상 및 유지하고 하얀연꽃 요양원 이용에 따른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자 함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가. 월 이용료 :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,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%, 8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.

[2026년 1월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.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」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,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6년 12월 31까지 유효기간을 두어,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에 따라 이용수가(시설 이용료)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.]

2026년 하얀연꽃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.1:1 운영 (단위:원)						
등급	1일 수가	30일 기준	본인부담금(1일 기준)			
			일반대상 (20%)	경감대상 (12%)	경감대상 (8%)	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
1등급	93,070	2,792,100	18,614	11,168	7,446	0
2등급	86,340	2,590,200	17,268	10,361	6,907	0
3등급	81,540	2,446,200	16,308	9,785	6,523	0

※ 시설 3등급 ~ 시설 5등급은 3등급 수가적용

나.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,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료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뵈고 진찰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, 본인부담금은 진료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에 따라 산정되며, 입소자는 계약의 진료비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

경감대상자는 12%, 8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.

진찰구분	수급자 본인부담금(기준)				(단위: 원)
	일반 (20%)	감경대상자 (12%)	감경대상자 (8%)	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(8%)	기초생활수급자 (0%)
초진 (18,840)	3,760	2,260	1,500	1,5000	무료
재진 (13,370)	2,670	1,600	1,060	1,060	

다. 기타비용부담액(비급여대상)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, 식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얀연꽃 기관정보에 고지된 금액으로 한다.

비급여항목	기타 비용부담액			(단위: 원)
	1식 단가기준	30일 기준	비고	
식사비(1일 3식)	2,500	225,000	저염식 고단백	
간식비(1일 2회)	500	30,000		
식간식비	1개월	255,000		

4.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서비스 이용자, 신원인수인(보호자)간에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신원인수인 및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단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에 따른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(권리)

-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

(의무)

-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입소자가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입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※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.

- 1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
- 4) 기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으로써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

나. 입소자의 권리·의무

(권리)

-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
-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
- 입소자의 인권(사생활, 학대방지, 식생활, 위생, 의료 및 건강, 프로그램, 교육, 진정권등)을 보장받을 권리
- 타 입소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

(의무)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요양원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

5.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때

나. 입소자·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- 다. 입소자·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받고 다른
어르신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을 때
- 라. 2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고도 사유 및 기한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(고의성)
- 마.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의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
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·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바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·이용자의 생활에
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서비스제공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가할 경우.
- 사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회복지법인보문복지회

노인요양시설 **하얀연꽃**